#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2939 발의연월일: 2024년 8월 22일

발 의 자: 박선미의원

## 1. 제안이유

가. 정보통신금융사기,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화·지능화 되어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.

나.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하남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금융회사의 책무(안 제4조)
- 라. 시민의 권리 및 책무(안 제5조)
- 마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사.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라. 기타사항: 덧붙임

마. 입법예고 결과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13. ~ 8. 18.

○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## 바. 부서의견(일자리경제과):

- 고도화·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,
- 시책 사업 추진은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사항으로, '안 제3조(시장의 책무) …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'를 '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'로 부분 변경으로 의견 제출

#### ⇒ 집행부 의견 미반영

#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,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관련기관"이란 금융감독원, 하남시 소재 경찰서,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.
  - 2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금융회사의 책무)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,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시민의 책무) 하남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

- 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,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)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
  - 2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
  - 3.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계층에 관한 관리
  - 4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·관 협력
  - 5.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,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「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,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 력할 수 있다.
- 제8조(포상 등)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· 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하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 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금융회사"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 - 가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 - 나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 - 다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 - 라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 - 마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 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 - 바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
  - 사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
  - 아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
  - 자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
  - 차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
  - 카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 - 타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 - 파.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2. "전기통신금융사기"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 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(欺罔)·공갈(恐喝)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, 대출의 제공·알선·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한다.

- 가. 자금을 송금 ·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
- 나.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·이체하는 행위
- 다.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
- 라.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
- 2의2. "전자금융거래" 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 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 다.
- 3. "피해자" 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.
- 4. "사기이용계좌" 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·이체된 계좌,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.
- 5. "피해금"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 계좌로 송금·이체된 금전,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.
- 6. "피해환급금"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 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 하는 금전을 말한다.
- 7. "이용자" 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


# 타 지방자치단체 최근 조례 제·개정 현황

(2024. 08. 05. 현재)

연 번	자치단체명	법 규 명	제 ·개정 일	소관부서	비고
1	경기도 안산시	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	2024-02-14	기획경제실 소상공인지원과	
2	경기도	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	2023-12-22	경제투자실 공정경제과	
3	경기도 시흥시	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10-11	경제국 소상공인과	
4	경기도 성남시	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23-05-08	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	
5	경기도 가평군	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23-04-12	경제산업국 소상공인지원과	
6	경기도 평택시	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22-12-20	기획항만경제실 일자리창출과	
7	경기도 화성시	화성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	2022-04-28	기업투자실 지역경제과	
8	경기도 고양시	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	2021-12-28	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지원과	
9	경기도 파주시	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12-27	재정경제실 일자리경제과	
10	경기도 남양주시	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1-05-13	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	
11	전라남도 신안군	신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4-07-15	기획전략실 경제유통과	
12	경상남도	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24-07-04	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	
13	인천광역시 남동구	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	2024-07-01	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	

연 번	자치단체명	법 규 명	제 ·개정 일	소관부서	비고
14	전북특별자 치도 남원시	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	2024-04-02	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과	
15	충청남도 태안군	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	2024-03-25	경제문화복지국 경제진흥과	
16	전북특별자 치도 완주군	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24-03-21	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	
17	충청남도 홍성군	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	2024-03-11	경제문화농업국 경제정책과	
18	전북특별자 치도 부안군	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	2024-03-08	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	
19	전북특별자 치도 정읍시	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	2024-02-02	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	
20	충청남도 예산군	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	2023-10-30	산업건설국 경제과	
21	전북특별자 치도 김제시	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3-09-27	경제복지국 경제진흥과	
22	전라남도	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3-07-03	일자리투자유치 국 중소벤처기업과	
23	전라남도 광양시	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3-07-01	미래산업국 투자경제과	
24	충청남도 금산군	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06-30	경제산업국 경제과	
25	충청남도 서천군	서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3-06-09	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	
26	전라남도 곡성군	곡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3-05-23	도시경제과	
27	전라남도 장흥군	장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3-03-28	지역경제과	

연 번	자치단체명	법 규 명	제 ㆍ개정 일	소관부서	비고
28	경상북도	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3-01-02	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	
29	충청남도 보령시	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2-12-30	경제도시국 지역경제과	
30	전라남도 보성군	보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2-12-29	경제교통과	
31	전라남도 함평군	함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	2022-12-29	인구경제과	
32	전라남도 장성군	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2-12-23	일자리경제실	
33	충청남도 당진시	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	2022-12-15	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	
34	전라남도 순천시	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2-12-15	미래산업국 경제진흥과	
35	충청남도 계룡시	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	2022-11-10	경제산업과	
36	전라남도 담양군	담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	2022-11-07	미래성장국 경제교통과	
37	경상남도 창원시	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2-10-07	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	
38	전라남도 강진군	강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2-10-06	인구정책과	
39	전라남도 영암군	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	2022-10-06	농업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	
40	충청남도 논산시	논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2-09-13	농산경제국 지역경제과	
41	충청남도 공주시	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2-08-30	기획예산담당관	

연 번	자치단체명	법규명	제 ㆍ개정 일	소관부서	비고
42	강원특별자 치도 철원군	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	2021-12-27	경제진흥과	
43	경상북도 경산시	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1-12-14	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	
44	충청북도 옥천군	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1-09-29	미래전략국 경제과	
45	충청남도 아산시	아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	2021-03-15	기획경제국 기업경제과	
46	충청남도 서산시	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1-02-28	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	
47	충청남도 천안시	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	2020-12-21	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	
48	경상남도 김해시	김해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0-10-08	혁신경제국 민생경제과	
49	전라남도 구례군	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0-10-05	경제활력과	
50	전라남도 화순군	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0-06-30	지역경제과	
51	전라남도 진도군	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	2020-06-10	안전생활지원과	
52	전라남도 여수시	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0-05-27	기획경제국 경제일자리과	
53	충청북도	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0-04-10	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	
54	전라남도 목포시	목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0-02-03	미래전략산업국 지역경제과	
55	전라남도 무안군	무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0-01-13	경제건설국 지역경제과	

연 번	자치단체명	법 규 명	제 ㆍ개정 일	소관부서	비고
56	전라남도 영광군	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	2019-12-31	경제에너지과	
57	전라남도 완도군	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	2019-12-30	경제교통과	
58	전라남도 고흥군	고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	2019-12-23	행정과	
59	전라남도 해남군	해남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19-12-16	경제산업과	
60	충청남도	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	2019-09-20	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	
61	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	2024-06-28	경제국 소상공정책과	
62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22-12-30	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	
63	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22-10-11	경제국 경제정책관	
64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12-30	공정경제담당관	
65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20-02-05	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	
66	울산광역시	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19-09-26	경제산업실 기업지원과	
67	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18-11-15	경제창업국 경제정책과	
68	전북특별자 치도	전북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23-12-08	기업유치지원실 금융사회적경제 과	
69	서울특별시 도봉구	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11-09	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	

연 번	자치단체명	법 규 명	제 ·개정 일	소관부서	비고
70	서울특별시 서대문구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08-02	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	
71	강원특별자 치도	강원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3-06-09	경제국 경제정책과	
72	서울특별시 관악구	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02-23	기획경제국 지역상권활성화 과	
73	서울특별시 양천구	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	2022-12-29	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	
74	서울특별시 동작구	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	2022-12-08	생활경제국 경제정책과	
75	서울특별시 서초구	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	2022-05-12	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	
76	서울특별시 노원구	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2-04-28	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	
77	서울특별시 강북구	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2-03-18	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	
78	광주광역시 남구	광주광역시 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	2022-03-10	경제재정국 민생경제과	
79	서울특별시 금천구	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12-31	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	
80	서울특별시 성북구	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12-31	안전생활국 지역경제과	
81	인천광역시 서구	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12-20	경제국 경제정책과	
82	서울특별시 구로구	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21-11-11	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	
83	서울특별시 강동구	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10-27	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	

연 번	자치단체명	법규명	제 ·개정 일	소관부서	비고
84	제주특별자 치도	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19-07-31	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	
85	부산광역시 부산진구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	2023-08-03	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	
86	부산광역시 동래구	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06-30	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	
87	전라남도 나주시	나주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	2020-06-01	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	